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93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 김성원·김선교·김종양

강선영 • 박충권 • 임이자

한기호 · 최수진 · 조승환

최은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재정분권 시행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도지사가부담해야하는 실정으로, 재정비율이 낮은 하천에 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2020년 기준, 지방하천 정비율은 47.24%, 국가하천 정비율은 79.75%로 지방하천의 제방정비율은 국가하천 제방비율의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최근 6년간 지방하천 홍수 피해액은 2,731억원으로 국가하천 홍수 피해액 529억원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최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오송읍 미호강 사례처럼 지방하천, 국가하천 구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이분화돼 재해 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

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제25조 및 제27조의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 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과 합류하는 지점으로부터 국가 하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의 구간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하천
- 2.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으로서 하천을 보 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 관이 인정하는 하천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지정·변경·해제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및 제6항의 국가하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7조의2(국가지원 지방하천 공사 및 유지·보수) ① 국가지원 지방 하천에 대한 하천공사는 환경부장관이 시행한다.
 - ②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구분 및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기	현 행	개 정 안
는 지방하천의 구간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하천 2.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하천으로서 한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하천 는 하천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조방하천의 지정・변경・해제 및		제7조의2(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환경부장관 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 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 하천과 합류하는 지점으로부 터 국가하천의 배수영향을 받 는 지방하천의 구간을 말한 다)에 해당하는 하천 2.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난에 해당하는 하천으로서 하 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하천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 방하천의 지정・변경・해제 및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장관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 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 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 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⑧ (생 략) <신 설>

준용한다.
세25조(하천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u>다만, 제7조의2제1</u>
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하천기
본계획을 수립한다.
③ ~ ⑧ (현행과 같음)
세27조의2(국가지원 지방하천 공
사 및 유지·보수) ① 국가지
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
는 환경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유지
·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한
<u>다.</u>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 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 및 유 지·보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 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 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